

의안번호	제 188 호
의 결 연 월 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
무상대부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5월 31일

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

의안 번호	18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바이오세라믹 기업에 우수한 생산시설 제공 및 기술지원을 위한 “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”를 우리 도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(오송2단지)내에 건립을 위하여 2019년 충청북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어, '19.4.30.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충북개발공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함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(대부료의 감면)의 ‘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’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-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 부지를 건립·운영 기관인 ‘한국세라믹기술원’에 무상대부를 허가하기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 치 :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(오송2단지) 제한 2-1
(가지번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645번지)
- 면 적 : 16,496㎡ (도와 청주시가 1/2씩 공유지분 소유)
- 사용목적 :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을 위한 부지 무상사용
 - 사용기관 : 한국세라믹기술원
 - 사용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
-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(대부기간) 및 제34조(대부료의 감면)

3. 참고사항

-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: 붙임
- 관계 법령 : 붙임

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(오송2단지) 제한 2-1
- 사업기간 : 2019 ~ 2023년(5년)
- 규 모 : 부지 16,496㎡, 연면적 3,960㎡(센터동 2,640㎡, 공장동 1,320㎡)
- 총사업비 : 201.92억원(국비 100.96, 지방비 100.96)
- 주관기관 : 한국세라믹기술원(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)
- 사업내용 : 반제품 생산, 공인 평가지원, 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

□ 추진상황

- 건립부지 취득안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: '18.8.24.
-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(도, 청주시, 세기원) : '18.9.28.
※ 지방비 부담 협의 완료(도/청주시 각 50% 부담)
-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무상대부안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: '18.10.10.
- 2019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: '18.10.24.
-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확보('19년 본예산) : '18.12.
-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입주신청 및 승인 : '19.4.
- 부지 매입(도와 청주시 1/2씩 지분 매입) : '19.4.30.

□ 향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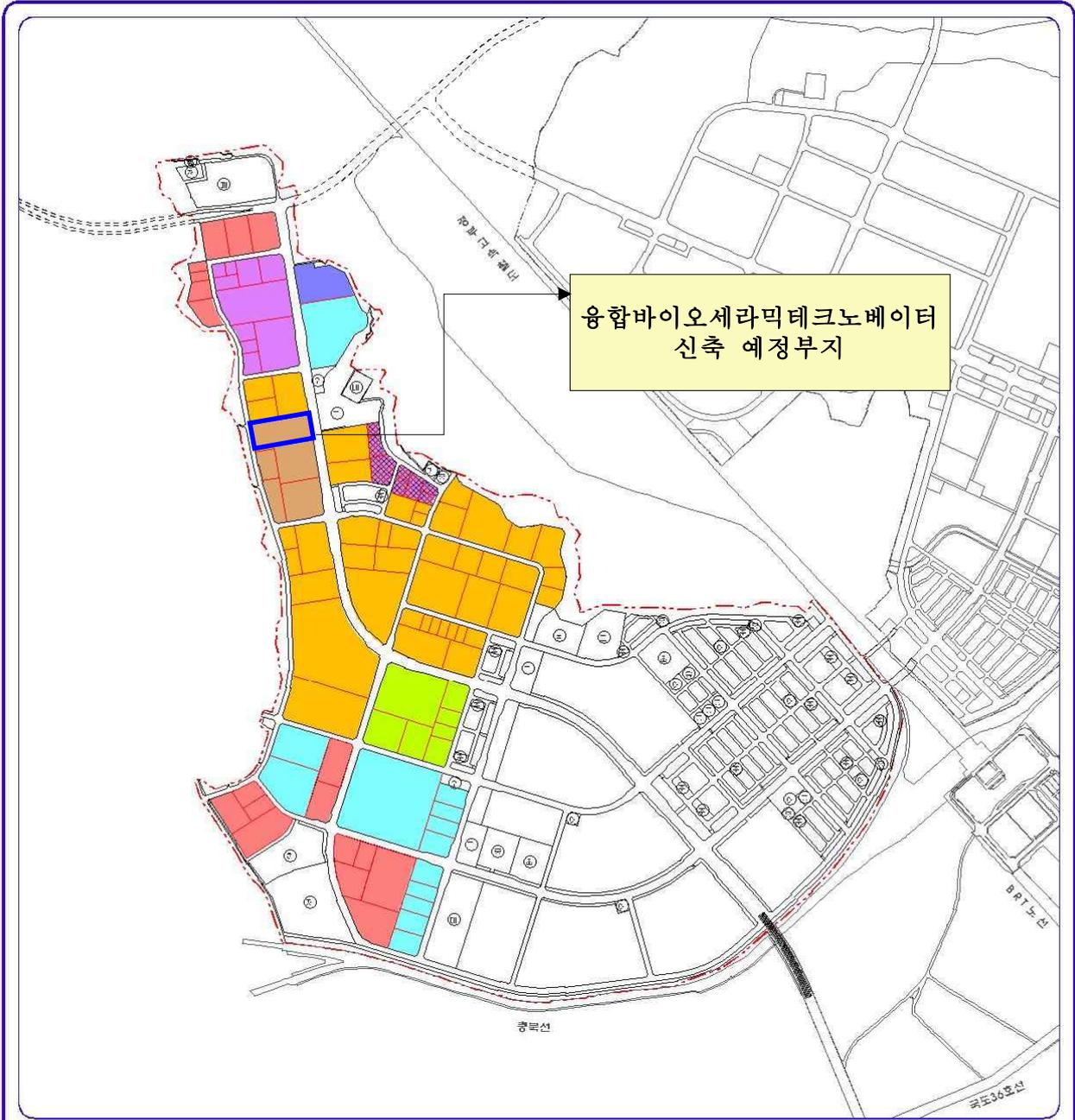
-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: '19.5.~12.
- 사업부지 대부계약 체결(도, 청주시, 세기원) : '19.8.

□ 기대효과

- 기업유치 확대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도모
 - 입주기업 목표 : ('23) 15개사 → ('25) 30개사
- 기업 매출 및 고용 증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 - 매출효과 3,000억원, 고용창출 1,000명

위 치 도

○ 위 치 :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(오송2단지) 제한2-1블럭



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
(오송 2단지) 조성사업
- 업종배치계획도 (변경) -

(S = 1 : 6,000)



 I T		
 B T		
 융합바이오폴리스		
 바이오산업용지		
 융합산업용지		
 제한용지 1		
 제한용지 2		
 부대용지		
		
		

관계 법령 발췌

<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>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<p>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</p> <p>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5.1.20.></p> <p>1.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</p> <p>2.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</p> <p>3.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</p> <p>4.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·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</p> <p>③ ~ ④ 생략</p>	
<p>제31조(대부기간)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2. 생략</p> <p>② ~ ⑤ 생략</p>	<p>제30조(대부기간)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생략</p> <p>4.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</p>
<p>제34조(대부료의 감면) ①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</p> <p>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</p> <p>② ~ ③ 생략</p>	<p>제35조(대부료의 감면) ① 법 제34조제1항제 2호에서 "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~ 3. 생략</p> <p>4.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부하는 경우</p>

<특정연구기관 육성법>

특정연구기관 육성법	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
<p>제2조(특정연구기관)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·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(이하 “특정연구기관“이라 한다)으로 한다.[전문개정 2011.6.7]</p>	<p>제3조(연구기관의 지정) 법 제2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“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8. 생략 9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